특허출원 명세서 작성

2018.09.19

특허청 컴퓨터심사과 윤혜숙



목차

- ▶ 특허출원 절차
- ▶ 특허출원 서류의 구성
- ▶ 명세서의 역할과 구성
- ▶ 명세서 주요 부분
- ▶ 청구범위 작성 방법
- ▶ 프로그램 관련 발명의 명세서 예제



특허출원 절차

- ▶특허출원
 - 전자출원이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설치 후 작성
- ▶ 심사청구
 - 출원일 후 3년 이내
 - 우선심사 청구
- ▶ 형식적 요건
 - 기한 및 수수료 등 보정요구서
- ▶ 실체적 요건
 - 기재방법, 신규성, 진보성 등 특허요건 만족
 - 보정된 명세서, 의견서 제출
- ▶ 등록 또는 거절
 - 분할출원



특허출원 서류의 구성(1)

특허출윈서

특허를 신청합니다.

요약서

여러분, 제 발명은 이런거랍니다. 참고 하세요.

그 분야 평균적 기숙자가

명세서

이거 보면 제 발명을 만들수 있어요(기술)

여기까지가 제 권리, 범하지 마세요(권리)

도면

이해가 어려우면 이 도면을 보시죠.



특허출원 서류의 구성(2)

- ▶ 출원서 작성 서지사항
 - 출원인의 성명(출원인 코드), 주소
 - 제출연월일
 - 발명의 명칭
 - 발명자 성명, 주소
 - ∘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성명, 주소
- ▶ 명세서 작성
 - 발명의 상세한 설명
 - · 특허청구범위
- ▶ 도면(있으면), 요약서



명세서의 역할과 구성

기술 문헌으로서 역할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당업자)이 쉽게 <u>실시</u>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 -> 발명의 공 개 기능

특허법에서의 실시는 침해와 관련이 있는 행위 전반이지만 여기서 구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함

권리서로서 역할

명세서 내의 특허청구범위는 특허권의 범위를 확정



명세서 주요 부분 예

발명품의 제목

특허청구범위의 기술을

공개, 당업자가 질시할

수 있도록 기재

【발명의 명칭】

수중 구명구(Life Jacket)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술분야】

본 발명은 수중 구명 수면 위로 높게 부양함으로써 \ 구명구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도 1은 종래 기술에 따른 수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종래 기구명구(10)를 입는 방식으로 착용하

【발명의 내용】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착용자의 상체를 수면 위로 높게 부양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수중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수중 구명구를 제공함에 있다.

【과제 해결 수단】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수중 구명구는, 착용자의 허리 둘레에 착용되도록 형성된 허리 착용부, 및 상기 착용자의 등을 지지하도록 상기 허리 착용부의 배면에서 상방으로 연장되는 등 지지부를 포함한다.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수중 구명구의 착용자의 상체가 수면 위로 충분히 노출되게 됨으로써 착용자는 충분한 안전감을 느낄 수 있게 되며, 착용자는 수중 구명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수면 위로 두 팔을 내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이하에서는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면들 중 동일한 구성요소들은 가능한 한 어느 곳에서든지 동일한 부호들로 나타내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는 공지기능 및 구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등 지지부(130)는 허리 착용부(110)의 배면에서 연장되며 수중 구명구의 착용자의 등 부분을 지지함으로써 착용자가 마치 의자에 앉은 것처럼 안정적인 상태로 수중활동을 할수 있게 한다. 또한, 등 지지부(130)에 의해 수중 구명구의 무게 중심이 허리 착용부(110)의 중심에서 착용자의 등쪽으로 이동하게 되며, 그에 따라 수중 구명구는 뒤쪽으로 약간 기울어진 의자와 같은 모양으로 수중에서 착용자를 지지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구범위]

[청구화 1]

착용자의 허리 둘레에 착용되도록 형성된 허리 착용- 건 상기 착용자의 등을 지지하도록 상기 허리 착용부의 바, 보

를 포함하는 수중 구명구.

[청구항 2]

수중

수중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허리 착용부의 배면에서 연장되며, 상기 착용자의 어제 건착부를 더 포함하는 수중 구명구.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어깨 전착부는 상기 등 지지부의 테두리를 'U'자형으로 절단함으로써 형성되는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중 구명구.

권리의 범위 확정,

명세서의 가장 중요

한 부분

명구.

내리 착용부는

되는 것을 특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허리 착용부의 양 끝단 및 상기 어깨 견착부를 일체로서 체결하는 체결부를 더 포함하는 수중 구명구.

첨부된 도면에 대한

간략한 소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등 지지부에는 손잡이 흠이 형성되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허리 착용부의 상단에 상기 착용: 소정의 두께로 형성되며, 상기 허리 *

징으로 하는 수중 구명구.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허리 착용부의 내면에는 구막 형성에 따른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코팅제가 피복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중 구명구.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기술에 따른 수중 구명구를 착용하였을 때의 착용자의 수중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

도 2a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수중 구명구를 나타내는 도면,

도 2b는 본 발명의 일 실시에에 따른 수중 구명구를 착용하였을 때의 착용 자의 수중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 및

도 3a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수중 구명구를 나타내는 도면, 및

도 3a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수중 구명구를 착용하였을 때의 착 용자의 수중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특허 청구 범위

특허의 심장부

심사의 대상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정 () 특허법 제97조 :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출원서에 첨 부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하여 정해진다)

청구범위 해석의 기준

문언침해: 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구성요소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함, cf. 균등침해

문언침해의 판단연습

특허발명의 구성이 a, b, c로 이루이진 경우

특허발명: a+b+c

실시발명: a+b+c -> 침해 a+b+c+d -> 침해 a+b -> 비침해

청구범위에 필수적이지 않은 구성인 d를 추가한 경우

특허발명: a+b+c+<u>d</u>

실시발명: a+b+c -> 비침해



청구범위의 형식적 요건



특허법

특허법 제42조 제4항

특허청구범위에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이 1 또는 2이상 있어야 하며, 청구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 1.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 2.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

특허법 제42조 제6항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할 때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발명을 특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조/방법/기능/물질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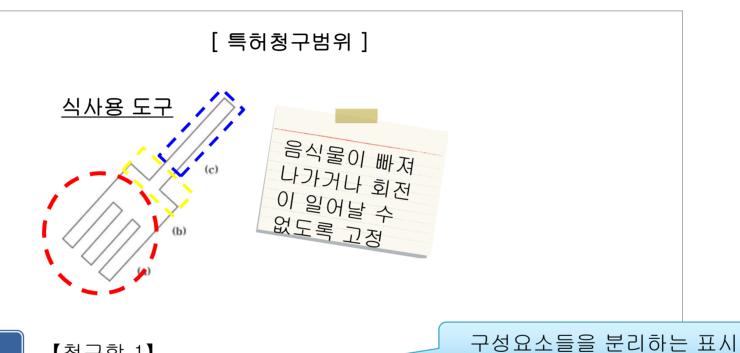


실무상 청구범위의 작성

- 공지기술로부터 특징부를 중심으로 발명을 이해
- 필수 구성요소를 선정
 - 독립항을 작성함에 있어서 필수 구성요소는 가급적 최소화
 - 적어도 독립항 자체로 완성된 발명이어야 함
 - 공지기술로부터의 특징부 포함
- ③ 필수 구성요소의 결합을 통해 독립항을 작성
- 발명을 구체화하는 부수적 구성요소를 통해 종속 항을 작성



청구항 연습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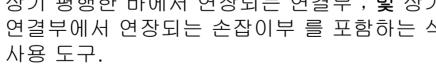


독립항

【청구항 1】

수개의 길고 평행한 바;

상기 평행한 바에서 연장되는 연결부 ; 및 상기 연결부에서 연장되는 손잡이부 를 포함하는 식





<또는>

【청구항 1】

수개의 길고 평행한 바; 상기 평행한 바에서 연장되는 연결부; 및 상기 연결부에서 연장되는 손잡이부 를 포함하며, 독립항 작성 시 장황한 설 명은 권리범 위를 축소!

상기 평행한 바와 상기 손잡이부가 상기 연결부의 타측에서 연장되고, 상기 평행한 바, 상기 연결부 및 상기 손잡이부가 동일 평면상에 놓이는 것인 식사용 도구.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평행한 바의 하부는 소정의 각도로 만곡 된 것인 식사용 도구.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손잡이부는 소정의 곡률반경을 갖도록 만곡 된 것인 식사용 모구



바람직한 청구 범위의 작성방법

1 발명에 필요한 구성요소만으로 기재

볼트 결합된 -> 결합된 재료를 불필요하게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는다 형상을 불필요하게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는다

광의로 해석될 수 있는 용어의 선택

볼트, 너트 -> 결합기구, 결합부, 체결구 사각형 케이스 -> 본체부



프로그램 관련 발명 명세서 예제

청구 범위 : 방법 장치, 물건

【 발명의 명칭 】

영문명칭 必

승객 운반 중인 택시에 대한 배차예약 장치, 방법 및 컴퓨터 판독가능 기록매체

{METHOD, DEVICE AND COMPUTER READABLE RECORDING MEDIUM FOR RESERVING TAXI DRIVING WITH PASSENGER}

- · 발명의 내용에 따라 간명하게 기재
- · 당해 발명의 카테고리가 모두 포함되도록 기재 물건 + 장치 ⇒ 안테나 및 그 제조장치 방법 + 장치 ⇒ 안테나의 제조방법 및 그 제조장치
- ·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명칭과 일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기술분야】

【0001】본 발명은 승객 운반 중인 택시에 대한 배차예약 장치, 방법 및 컴퓨터 판독가능 기록매체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빈 택시 뿐만 아니라 승객이 타고 있는 택시에 대해서도 배차예약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택시배차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승객운반 중인 택시에 대한 배차예약 장치, 방법 및 컴퓨터 판독가능 기록매체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0002】스마트폰의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많은 산업들이 성장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콜택시 애플리케이션과 관련된 분야가 많은 성장을 이루고 있다. ~ (중략)

【선행기술문헌】

(특허문헌)

특허청

[0005](특허문헌 0001) 일본 공개특허 제2002-140788호 (2002.05.17 공개)

【발명의 내용】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0006】본 발명은 승객을 운반하고 있는 택시가 운행을 종료하기 전에 배차예약을 받을수 있게 함으로써, 배차대상이 되는 택시의 범위를 확장시켜 사용자의 콜택시 이용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승객 운반 중인 택시에 대한 배차예약 장치,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어떤 해결 수단에 의해 해당과제가 해결되었는지 기재

•실무 상 특허청구범위 그대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임

【과제의 해결 수단】

【0007】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는 승객 운반 중인 택시에 대한 배차예약방법은 (a) 사용자 단말로부터 출발지 및 목적지를 포함하는 운행요청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b) 상기운행요청정보에 포함된 출발지 부근의 도착지로 승객을 운반하고 있는 를 기준으로 미리설정된 배차 범위 내에 있는 승객 탑승 운행가능 택시의 단말을 검색하여, 상기 검색된 운행가능 택시 단말로 배차요청정보를 전송하는 단계; 및 (c) 상기 승객 탑승 택시의 승객 운반 중 또는 승객 운반 종료 후 상기 승객 탑승 택시의 단말로 상기 배차요청정보를 전송하고, 상기 배차요청정보에 응답한 승객 탑승 택시의 단말에 대하여 배차완료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 (중략)

【발명의 효과】

【0009】본 발명은 택시 배차 대상을 빈 택시에만 한정하지 않고 승객을 태워서 운행하고 있는 택시까지 확장함으로써, 사용자에게 배차할 택시 풀을 확대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해, 사용자에게 배차될 수 있는 택시의 대수가 많아질 수 있고, 각 사용자의 택시배차 성공률이 향상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0010】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는 승객 운반 중인 택시에 대한 배차예약 시스템의 구조도이다.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 내용의 공개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11】아래에서는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본 발명의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그러나 본 발명은 여러 가지 상이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설명하는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도면에서 본 발명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과 관계없는 부분은 생략하였으며,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한 도면 부호를 붙였다. ~ (중략)

【0016】이하, 도 1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는 시스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0017】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는 시스템은 사용자 단말(100), 승객 탑승 택시 단말(220), 승객 미탑승 택시 단말(210), 서버(300)를 포함한다.

【0018】사용자 단말(100)에는 콜택시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을 수 있다. 사용자 단말(100)은 콜택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출발지와 목적지 정보를 서버(300)로 전송함으로써, 출발지로의 콜택시 호출을 요청할 수 있다.

-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가장 중요한 부분
- ·당업자의 수준에서 이해하여 재현할 수 있도록 기재
- ·도면을 참조해가며 도면부호를 병기하여 기술함이 바람직 ⇒ 미리 도면, 도면 부호 준비



【청구범위】

【청구항 1】

서버에 의해 수행되는, 승객 운반 중인 택시에 대한 배차예약방법에 있어서,

- (a) 사용자 단말로부터 출발지 및 목적지를 포함하는 운행요청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 (b) 상기 운행요청정보에 포함된 출발지 부근의 도착지로 승객을 운반하고 있는 승객 탑 승 택시의 단말을 검색하는 단계; 및
- (c) 상기 승객 탑승 택시의 승객 운반 중 또는 승객 운반 종료 후 상기 승객 탑승 택시의 단말로 상기 배차요청정보를 전송하고, 상기 배차요청정보에 응답한 승객 탑승 택시의 단말에 대하여 배차완료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승객 운반 중인 택시에 대한 배차예약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승객 탑승 택시의 단말은,

운행 중 배차요청을 수락함을 나타내는 우선배차 수락정보를 상기 서버로 전송한 택시 단말인, 승객 운반 중인 택시에 대한 배차예약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는,

상기 승객 탑승 택시의 도착지가 상기 출발지를 기준으로 미리 설정된 배차 범위 내에 있는 승객 탑승 택시의 단말을 검색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상기 배차범위는,

상기 출발지로부터 미리 설정된 거리만큼 떨어진 범위 또는 택시가 상기 출발지까지 도달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이 미리 설정된 시간 이내에 해당하는 범위인 것인, 승객 운반 중인 택시에 대한 배차예약방법.



~ (중략)

[청구범위]

【청구항 16】

승객 운반 중인 택시에 대한 배차예약장치에 있어서,

사용자 단말로부터 출발지 및 목적지를 포함하는 운행요청정보를 수신하는 운행요청정보수신부;

상기 운행요청정보에 포함된 출발지 부근의 도착지로 승객을 운반하고 있는 승객 탑승 택시 단말을 검색하고, 상기 승객 탑승 택시의 승객 운반 중 또는 승객 운반 종료 후 상기 승객 탑승 택시의 단말로 상기 배차요청정보를 전송하는 운행가능 택시단말 배차요청부; 및

상기 배차요청정보에 응답한 승객 탑승 택시의 단말에 대하여 배차완료하는 배차완료정보 전송부; 를 포함하는, 승객 운반 중인 택시에 대한 배차예약장치.

【청구항 17】

제 1 항 내지 제 15 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르는 승객 운반 중인 택시의 단말에 대한 배차예약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이 저장된 컴퓨터 판독가능 기록매체.



【요약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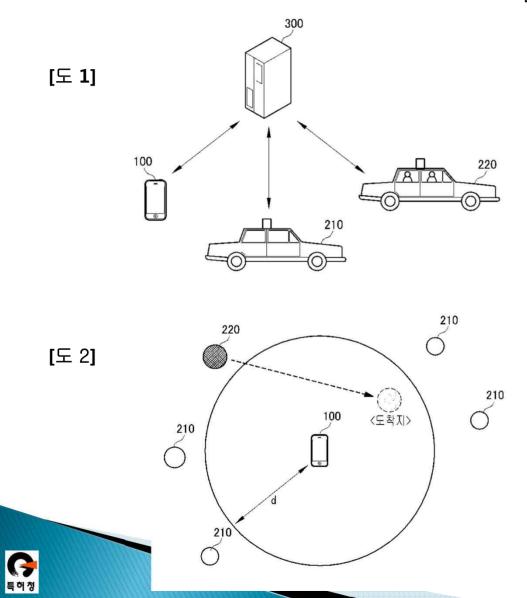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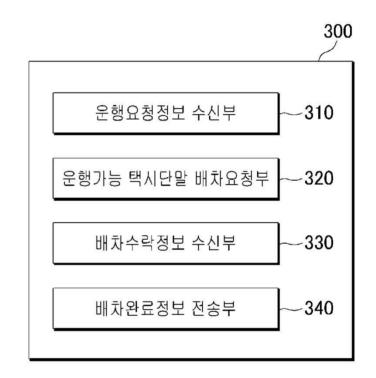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는 승객 운반 중인 택시에 대한 배차예약방법은 (a) 사용자 단말로부터 출발지 및 목적지를 포함하는 운행요청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b) 상기 운행요청정보에 포함된 출발지 부근의 도착지로 승객을 운반하고 있는 를 기준으로 미리 설정된배차 범위 내에 있는 승객 탑승 운행가능 택시의 단말을 검색하여, 상기 검색된 운행가능택시 단말로 배차요청정보를 전송하는 단계; 및 (c) 상기 승객 탑승 택시의 승객 운반 중또는 승객 운반 종료 후 상기 승객 탑승 택시의 단말로 상기 배차요청정보를 전송하고, 상기 배차요청정보에 응답한 승객 탑승 택시의 단말에 대하여 배차완료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도면】

[도 3]





감사합니다

Q&A

